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	기	관	의	장	
선					
람					



제1096호 2019. 11. 22. (금)







시화-철쭉

시조-갈매기

시목-느티나무

시 고

○ 삼척시 고시 제145호 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 고시 ------ 2

고 공

○ 삼척시 공고 제973호 신조,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------5 ○ 삼척시 공고 제984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-----7 ○ 삼척시 공고 제99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------12 ○ 삼척시 공고 제99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------ 15 ○ 삼척시 공고 제100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------18

77					
1 5					
1 0					
1 - 1 L					
ㅁ					

발행 : 문화공보실 (전화 : 570-3221, FAX : 570-3132)

삼척시 고시 제2019 - 145호

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 제24조,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1. 22.

삼 최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2048-23 외 3건

종전주소	도	로명주소		도	로명	비	ี
0717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사유		خا
		(별	지참조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(☎570-3946~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9. 11. 22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순	マッファ	도로명]주소			도로명
번	종전주소	주 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 사유
1	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33-1	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2048-23	20191122	건물신축	20090807	지역적 특성반영
2	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09-31 (증산동)	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09-33 (증산동)	20191122	건물군 분할	20090626	해당구간내 공원명칭활용
3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363-1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양리길 384-28	20191122	건물신축	20090626	지역명 (동막리마을명)사용
4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-98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-96	20191122	부여오류	20090626	행정구역명사용

투여내명 도로명주소

바	全	중전주소	五豆명주소	고시일	상	五星場立시일	五星場 单岛小舟	中
		A	44					-10
팡마	-	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33-1	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2048-23 20191122	20191122	건물신축	20090807	지역적 특성반영	
마니 다이	7	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09-31 (증산동)	(증산동)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09~33 (증산동) 20191122 건물군분할	20191122	건물군분할	20090626	20090626 해당구간내공원명침활용	
팡	m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363-1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양리길 384-28	20191122	건물신축	20090626	20090626 지역명(동막리마을명)사용	
の対に歪	4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-98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-96	20191122	불정허늄	20090626	행정구역명사용	

삼척시 공고 제2019-973호

신조,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

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년 11월 15일

삼 척 시 장

○ 등 록 사 유 :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하장면·정라동 민원실 통합인증기 교체

○ 등록 연월일 : 2019. 11. 15.

○ 등록 공인명 및 인영

구분	공 인 명	규격	인 영	등록사유	비고
신조	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인	2.0cm * 2.0cm (정방형)	삼척시재정 안정화기급 운용관인	재정안정화기금	
공인	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출납인	1.8cm * 1.8cm (정방형)	삼척시지정 안정화기금 출납원인	설치	
	삼척시장인 (건축물관리 민원실인증기전용)	2.7cm * 2.7cm (정방형)	問題宣		
재등록 공인	정라동장인 (민원실인증기전용)	2.7cm * 2.7cm (정방형)		통합인증기교체	
	하장면장인 (민원실인증기전용)	2.7cm * 2.7cm (정방형)			

구분	공 인 명	규격	인 영	등록사유	비고
	삼척시장인 (건축물관리 민원실인증기전용)	2.7cm * 2.7cm (정방형)			
폐기 공인	정라동장인 (민원실인증기전용)	2.7cm * 2.7cm (정방형)		통합인증기교체	
	하장면장인 (민원실인증기전용)	2.7cm * 2.7cm (정방형)			

삼척시 공고 제2019 - 984호

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

삼척에서 시행하는 삼척(도계) 도시계획도로(소로3-32호선)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,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을 공고하고, 같은 법 제15조(보상계획 의 열람 등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1월 22일

삼 척 시 장

- 1. 사업시행자 : 삼척시장
- 2. 사 업 명: 삼척(도계) 도시계획도로(소로3-32호선) 개설공사
- 3. 사업개요

가. 위 치 : 강원도 도계읍 도계리 일원 나. 사업내용 : 도로개설 L=130.0m, B=6.0m

- 4. 토지출입 및 보상대상 :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
- 5. 열람 및 이의신청기가 : 2019. 11. 22. ~ 2019. 12. 6.(14일간)
- 6. 열람장소

삼척시 도시과 도시개발팀 (☎ 033-570-3449)

7. 이의신청

보상계획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8. 보상시기
 - 가. 열람·공고기간이 끝난 다음, 감정평가 후 보상대상자 선정 개별 통지
 - ※ 보상시기는 보상예산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보상 계약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

9. 보상방법 및 절차

- 가. 보상절차 : 물건소유자와 협의 계약하되, 협의불응 시 수용재결 신청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⇒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⇒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⇒ 수용재결(보상협의 불성립 시) ⇒ 공탁 및 수용
- 나. 보상가격의 결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(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 추천이 없을 경우 2인)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함.
- 다.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 상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 도시과에 제출 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.

『감정평가업자 추천서』

토지소재지	- 9	편입	소 유	자	서명	m) =1 11 ==	=1 -1 Al -1
도시소재시	지번	면적(m²)	주 소	성명	(날인)	전화번호	평가업자
					49 XX XX		

※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10. 기타사항

- 가.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』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나.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라.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 (제외)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도시과 (☎ 033-570- 34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ſ	별	첨	

이 의 신 청 서

	성명또는명칭	
신청인	주소	
	토지소유자 (관계인)	
대상토	지 및 물건	
이의신청	요지 및 이유	

삼척(도계)도시계획도로(소로3-32호선)개설사업」보상계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. .

신청인

주 소:

성 명:

연 락 처 :

삼척시장 귀하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·물건의 소유권

■ 사업시행자 : 삼척시장

■ 사업명 : 삼척(도계)도시계획도로(소로3-32호선) 개설공사

1) 토지조서

		토지	소재지		면적	(m ¹)	소유자		4	소유권이외의권리		
순번	구분	위치	지번	지목	대장 면적	편입 면적	주소	성명	주소	성명	권리관계	判五
1		도계읍 도계리	247-2	대	76	1	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4-1 협동아파트 3-10*	정*영				
2		도계읍 도계리	244-5	디	17	6	삼척시 도계읍 도계3리 1*	장*윤	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	삼척시(주민생활지 원파-10212)	압류	
3		도계읍 도계리	244-3	대	53	13	삼척시 도계읍 도계3리 1*	장*윤	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	삼척시(주민생활지 원과-10212)	압류	
4		도계읍 도계리	244-2	대	17	3	삼척시 도계읍 도계3리 I*	남*연				
5		도계읍 도계리	247-8	대	564	273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·1	대한석탄공사				
6		도계읍 도계리	244-1	대	9,451	316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·1	대한석탄공사				
7		도계읍 도계리	413-3	도	116	52	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	국토교통부				
8		도계읍 도계리	247-9	도	62	1	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%	삼척시				
9		도계읍 도계리	247-12	도	740	104	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%	삼척시				
10		도계읍 도계리	244-8	도	136	112	강원도 삼척시 증앙로 296	삼척시				
		합	계	J	11,232	881						

2) 물건조서

순	2 m ⁰ →1	1 vi	물건의	그 국 미 그 제	스마	r1.01	소 유	- 자	관	계	인	비
번	소재지	지번	종 류	구조및규격	수량	단위	주소	성명	주소	성명	권리관계	고
1	도계읍 도계리	244-1	휀스	H=1.8m	60.3	m	서울시 용등포구 여의도동 55-1	대한석탄공 사				
2		,	주택	블록,샌드위치 판넬(스레트지 붕)	190.15	m²						
			지붕1	양철기와	220.02	m²						
			지붕2	슬레이트	220.02	m²	71.01 =					
			닭장	목조	6.56	m²	장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-2*	김*주				
2	도계읍	247-3	닭장지붕	슬레이트	7.74	m²						
2	도계리	247-3	블릭담장	H=1.6m, T=100	17	m						
			건물기초	콘크리트 T=200	265.89	m²						
			바닥포장	보도블릭	10.38	m²						
			장독대	h=0.5m	3.74	m¹						
			휀스	H=1.4m	22.5	m	12.					

삼척시 공고 제2019-996호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(송달)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장소 :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
2. 공고기간 : 2019.11.20. ~ 2019.12.04. (15일간)

3. 말소(예정)일자 : 2019.12.05.

4. 공고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	건축물대장 직권말소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홍옥〇
	주 소 (대장상주소)	
다. 처분의 원인된 시실		건축물대장 철거·멸실
라. 처분하고자한 내용		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: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 243-1
		목조/스레이트 (1층:20.25㎡)
마.법적근거 및 조문	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

5. 유의 사항

- 가.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,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(청)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(☎033-570-396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11. 20.

삼 척 시 장

[별지 제11호 서식]

	의 견 제 출 서		
1. 예정된 처분의 제 되	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
성 2. 당사자	В		
주	소		
3. 의 견			
4. 기 타			
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(제31조 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
	년 월 일		
의견 제출인 주 소 : (전화번호)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			
삼척시장 귀하			
2024 1425 1425 1425 1	비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		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지기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
《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》

- 1.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,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.
- 3.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- 4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○ 담당부서 : 강원도 삼척시(청)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

○ 연 락 처 : 033)570-3965

삼척시 공고 제2019-998호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(송달)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장소 :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
2. 공고기간 : 2019.11.20. ~ 2019.12.04. (15일간)

3. 말소(예정)일자 : 2019.12.05.

4. 공고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	건축물대장 직권말소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이억〇
	주 소 (대장상주소)	
다. 처분의 원인된 시실		건축물대장 철거·멸실
라. 처분하고자한내용		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: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156-16
		목조/초가 (1층:30㎡ 단독주택)
마.법적근거 및 조문	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

5. 유의 사항

- 가.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.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(청)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(☎033-570-396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11. 20.

삼 척 시 장 [별지 제11호 서식]

	의 견 제 출 서		
1. 예정된 처분의 제 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
성 명 2. 당사자			
주 소			
3. 의 견			
4. 기 타			
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(제31조 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
	년 월 일		
0	견 제출인 주 소 : (전화번호)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		
삼척시장 귀하			
비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			
2.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고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고 제1조차 뭐	깨 기제에 구시기 마랍니다.		

《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》

- 1.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,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.
- 3.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- 4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○ 담당부서 : 강원도 삼척시(청)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

○ 연락처: 033)570-3965

삼척시 공고 제2019-1002호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(송달)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장소 :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
2. 공고기간 : 2019.11.21. ~ 2019.12.05. (15일간)

3. 말소(예정)일자 : 2019.12.06.

4. 공고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	건축물대장 직권말소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이대〇
	주 소 (대장상주소)	
다. 처분의 원인된 시실		건축물대장 철거·멸실
라. 처분하고자한 내용		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: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346
		목조/스레트 (1층:47.6㎡ 주택)
마.법적근거 및 조문	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

5. 유의 사항

- 가.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,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(청)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(☎033-570-396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11. 21.

삼 척 시 장

[별지 제11호 서식]

		의 견 제 출 서	
1. 예정된 제	처분의 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
2. 당사자	성 명		
	주 소		
3. 의	견		
4. 기	타		
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(제31조 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
		년 월 일	
	의	견 제출인 주 소 : (전화번호)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	
삼척시장 귀하			
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			

《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》

- 1.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,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.
- 3.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- 4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○ 담당부서 : 강원도 삼척시(청)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

○ 연락처: 033)570-3965